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

2025. 8.



한국관세무역개발원

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

목 차

I . 개 요 1

- 1. 과업개요 1
- 2. 과업목적 1
- 3. 과업범위 1

II . 과업세부내용 2

- 1. 전문가 참여자격 2
- 2. 과업절차 2
- 3. 과업내용 3

III . 제출서류 및 산출물 8

1. 과업개요

- ☐ 과 업 명 :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- ☐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
- ☐ 과업비용 : 약 80,000,000원 ※부가세 포함

2. 과업목적

- ☐ 전문 컨설팅을 통해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,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- ☐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, 유해·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, AEO 및 ISO45001 등 유사 인증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

3. 과업범위

- ☐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 점검 및 핵심 요소 구축

❖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요소

-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, 제거, 대체 및 통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 ('21. 8.)
- (핵심요소)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 요인 파악 ④ 위험 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 ⑤ 비상조치 ⑥ 도급 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

- 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의무이행 수준 점검
- ☐ 7개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
- ☐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, 매뉴얼 등 문서 작성 및 교육
- ☐ 도급·용역·위탁시 안전관리 진단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자문

II

과업세부내용

1. 전문가 참여자격

☐ 수행기관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1조, 제4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·공표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보건 진단기관

☐ 컨설턴트 자격

- 고용노동부가 지정하고 공표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
 - (1) KOSHA-MS*(KOSHA 18001 포함), ISO 45001 심사원
 - *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rea Occupation Safety & Health Agency - Management System)
 - (2)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실무경력자

2. 과업절차

☐ Plan-Do-Check-Act 절차에 따른 과업 수행

	계획(P)	실행(D)	점검(C)	개선(A)
내용	본·지사별 과업수행방향 설정	→ 착수회의시 설정한 방향에 따라 컨설팅 실시	→ 컨설팅 진행 중간 점검	→ 지속적 안전관리
방법	본·지사별 착수회의	월 1회 이상 실시	보고서 작성, 중간보고회 실시	개선·이행여부 추적관리

2.1 계획수립(Plan)

- (착수보고)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, 정보 및 지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(면담실시)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

으로 면담을 실시한다. 주요 내용으로는 1)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, 2) 사업장별 유해·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관한 실태 파악, 3)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현장 작동성 확인 등으로 면담한다.

- (계획수립)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착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. 계약상대자는 착수 회의 때 업무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지사별 특성,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등을 반영하여 컨설팅 주제 및 횟수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한다.
- (정보제공) 발주자는 사업장별로 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, 장치장 현황, 유해 위험 설비 현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

2.2 컨설팅 수행(Do) : 과업 내용 참고

2.3 중간점검(Check)

- 중간보고를 통하여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점검 등을 지원한다.

2.4 개선조치(Act)

- 중간점검 단계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완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완료 보고한다.

3. 과업내용

3.1.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 점검 및 핵심 요소 구축

- ☐ 안전보건관리규정, 매뉴얼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 점검
- ☐ 안전보건관리계획 방향 및 안전보건 목표 수립
- ☐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의 기능 수행여부 및 적정성 점검
 -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의 권한, 책임, 업무범위 분석
 - 타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운영 사례 수집 및 비교

- ☐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의 적정성 점검
- ☐ 도급·용역·위탁 근로자 안전보건 활동관리 점검
 - 도급·용역·위탁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 점검
 - 협의체 운영, 작업장 순회 점검, 안전교육 확인, 비상시 대피 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

3.2.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의무이행 수준 점검

- ☐ 법령에서 명시한 필수 이행 사항 여부 확인 및 적정성 검토
- ☐ 사업장별 지리적(공항, 항만)·업무적(특송, 관리, 휴대)·법적 요인을 포함한 안전관리 활동 점검 및 지도
 - 보호구 착용, 작업 절차 숙지, 교육·훈련 여부 등 안전관리 활동 관련 점검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관련 안전 점검
 - 전기기계·기구·설비 및 전기작업 등으로 인한 감전 재해 예방조치
 - 온열질환 및 재난 대비 안전관리 활동 관련 점검
- ☐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문서 점검 및 작성
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(ISO45001) 인증 관련 서류 점검 및 작성
 - 안전보건관리계획, 안전보건관리규정,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 점검 및 작성
 - 우리원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이력 관리
 - 작업계획서(장비, 중량물 등) 포함 기타 안전보건 관련 서류 점검 및 작성
- ☐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대상 안전보건관리 업무 지도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업무 지도

3.3. 주요 유해·위험 요인 파악 등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립

- ☐ 7개 사업장 대상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실시
 - 위험성평가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평가수행 인력이 7개 사업장 평가 실시
 - 공정의 흐름 파악 및 위험성평가지 위험수준(빈도3×강도3) 결정 및 개선 대책 제시
 - 위험성평가표 및 개선이행 점검표 등 위험성평가 관련 서류 점검 및 작성

□ 위험요소 개선대책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점검

- 보호구 관리 및 착용 실태 등 사업장별 작업환경 측정 확인
- 유해·위험 기계 안전 인증 및 안전 검사, 자율 안전 확인 신고 확인
-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항 등 사업장 안전 점검
- 작업장 점검 시 안전관리 대상 기계 및 설비 현황 파악
- 근로자 안전 작업 절차 수립,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도

□ 위험성평가 컨설팅 과업수행 대상 사업장

연번	구분	소재지	근로자수	취급화물
1	인천공항지사	•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50,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	39명	관리화물 휴대화물
2	인천공항특송지사	•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41-42,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	141명	특송화물
3	인천지사	•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99번길 67, 인천통합검사센터	29명	관리화물 이사화물
4	인천특송지사	•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99번길 25, 인천해상 특송물류센터	89명	특송화물
5	평택지사	•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255, 평택세관 지정장치장	55명	특송화물
6	군산지사	•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,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	30명	특송화물
7	부산지사	•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25, 용당세관 지정장치장 •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14번길 53, 부산세관 신항지정장치장 •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, 부산세관 지정장치장	35명	특송화물 관리화물 이사화물

□ 위험성평가 컨설팅 과업수행 절차 및 내용

절 차	내 용
사전 준비 및 계획수립	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 작성 - 평가의 목적 및 방법, 평가자의 역할, 평가시기·절차,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 수립 등 -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, 사전준비, 사전교육계획, 평가대상자 선정,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등 □ 위험성평가 실시 전 안전보건 정보 사전조사 - 기계·기구, 설비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정보조사,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 - 기계·기구,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조사 □ 위험성평가 실시 전 관리감독자 및 업무 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-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, 위험성평가 실행절차,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, 위험성평가 방법 및 결정방법, 감소 대책 수립 등
유해·위험 요인 파악	□ 작업장 순회점검 및 종사자 청취 등 유해·위험요인 파악 -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작업 및 공정별 목록화(list-up) 및 분석 - 작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구분하고 세부적 분류 - 유해·위험요인 파악 시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- 재해조사보고서, 작업환경측정, 건강진단, 사고사례 등 파악
위험성평가 실시	□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·강도법으로 측정 - 유해·위험 요인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위험성 결정 · 허용 가능한 위험 : 위험크기 1이상 2이하의 작업 · 허용 불가능한 위험 : 위험크기 3이상 9이하의 작업 -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한 내용을 평가표를 통해 정량화 - 위험성 수준은 유해·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낮음(1~2), 보통(3~4), 높음(6~9)으로 구분하고,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- 높음(6~9) 위험성 수준은 즉시 개선해야 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 □ 위험성 결정은 평가자 주관에 개입되지 않도록 기준에 따라 결정 - 위험성 결정 시 위험성평가 대상을 잘 아는 근로자 참여 필수

구 분	내 용
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	☐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- 위험성 결정 결과, 개선 및 즉시 개선이 필요한 위험성인 경우 위험성의 크기, 영향을 받는 종사자 수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제시 - 위험성 수준은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 시 낮은 등급으로 적용 ☐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은 개선대책 수립 - 위험성평가 개선 대책 수립 시 허용 가능 위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은 개선 기한, 담당 부서(또는 담당자) 등을 지정하여 개선 조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
위험성평가 결과 공유	☐ 위험성평가 결과 종사자 교육 - 위험성평가 시 도출된 유해·위험 요인 및 위험성 결정 결과, 위험성 감소 대책과 그 실행계획 및 실행 여부 종사자 교육 실시 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한 잔존 유해·위험 요인 공유 - 내부 게시판 또는 안전점검회의를 통하여 위험성 평가표 상시 게시 및 준수하거나 주의할 사항 공유(조치 완료 이력 관리)
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	☐ 위험성평가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기록물 보존(3년이상) -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기록 포함 -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공

3.4. 안전관리 자료 제공, 자문 운영, 교육실시

- ☐ 체크리스트 등 안전관리 자료 제공 협조 및 안전관리 자문 운영
 - 안전관리 서류 양식, 최신법령 및 규정 등 안전 관련 자료 제공
 - 분야별 교육교재 및 재해예방 포스터, 교육자료 등
 - 안전 관련 법규 준수사항 및 형벌·과태료에 관한 지도 및 자문
- ☐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지원
 - 정부 정책, 안전관리 동향, 타 기관 안전관리 우수사례, 사고사례 등
 - 위험성평가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전반 등
 -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 대상·내용 적정 여부, 관리책임자 법정 교육 이수 현황, 교육 미수료자 관리 점검

III

제출서류 및 산출물

구 분	제출시기	비 고
○ 용역 수행계획서(착수계) - 컨설턴트 인력 투입 등 사업장별 컨설팅 수행계획 및 산출내역서	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	
○ 관리감독자 대상 사전 면담 시행 - 회의록, 면담일지 등	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	
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자료 - ISO45001 매뉴얼 등 인증 관련 서류 일체 - 안전보건관리계획, 안전보건 관련 규정, 안전보건 절차서 및 지침서, 점검 체크리스트 등 ○ 유해·위험요인 점검 관련 자료 - 유해·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자료 - 위험성평가표 및 개선이행점검표 - 최근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통계 자료 - 장비 및 중량물 취급 관련 작업계획서, 근골격계 유해·위험요인 조사 자료 ○ 근로자 보호구 관리 기준 및 지급 관련서류 ○ 도급/용역/위탁 안전보건 활동관리 자료 ○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○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에 관한 서류 ○ 기타 안전보건 관련 서류	상시업무	
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점검	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	
○ 컨설팅 중간보고서 - 사업장별 컨설팅 진행 현황 등 중간보고 발표 자료	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	
○ 최종 결과보고서 - 주요 업무별 안전관리 매뉴얼(지침) 전파 및 교육 - 과업으로 수행한 모든 결과물을 포함 경영진 및 관리감독자 대상 최종 보고	컨설팅완료 시	